

2023년 HACCP 주요 정책방향

2023. 2. 8.



목 차

1 HACCP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이란

2 HACCP 관련 정책

1

HACCP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이란



HACCP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이란?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해썹)

국제식품규격위원회
(Codex) 지침



식품안전을 위해 국제적으로 권고되는
사전예방적 관리시스템

HA (위해요소분석)

Hazard Analysis

원료와 공정에서 발생 가능한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요소를 분석



CCP (중요관리점)

Critical Control Point

위해 요소를 예방, 제거 또는
허용수준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공정이나 단계를 중점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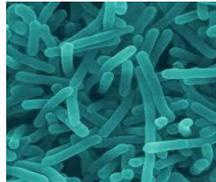
* 근거 법령: 『식품위생법』 제48조~제48조의5,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9조의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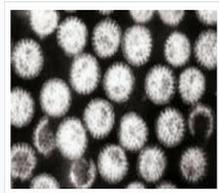
위해요소란?

생물학적 요소 (B)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화학적 요소 (C)

농약



중금속



항생제



물리적 요소 (P)

금속성
이물



머리카락



나무토막





법적근거: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 제4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 제48조의2(인증 유효기간)
- 제48조의3(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 · 평가 등)
- 제48조의4(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등)
- 제48조의5(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같은 법 시행령

- 제33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 제34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의 위탁 등)

같은 법 시행규칙

- 제62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대상 식품)
- 제63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신청 등)
- 제64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
- 제65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지원 등)
- 제66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 · 평가)
- 제67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취소 등)
- 제6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출입 · 검사 면제)
- 제68조2(인증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등)
- 제68조의3(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등)
- 제68조의4(교육훈련기관의 교육내용 미 준수사항 등)
- 제68조의5(교육훈련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법적근거: 축산물 위생관리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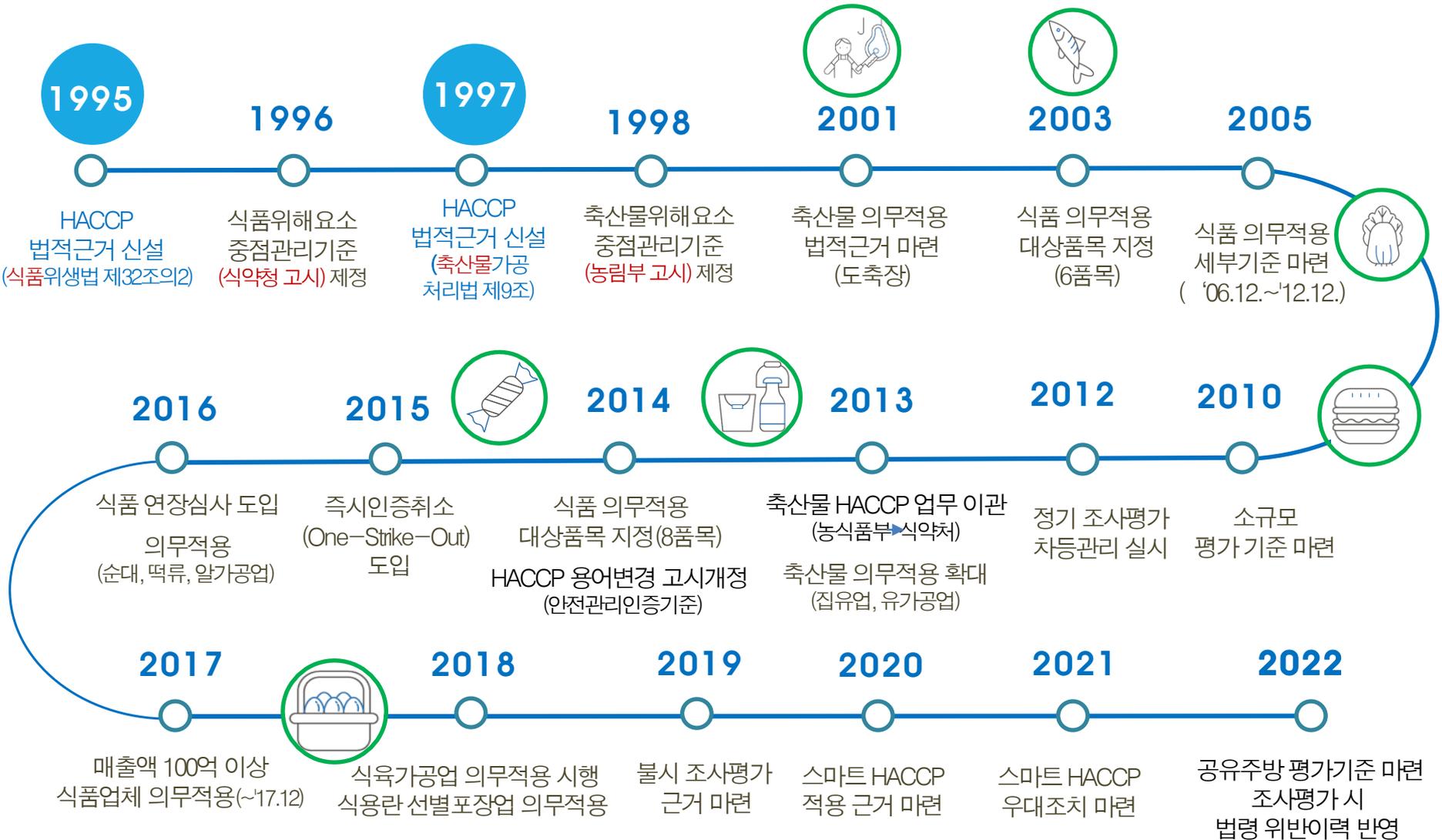
- 제9조[안전관리인증기준]
- 제9조의2[인증 유효기간]
- 제9조의3[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평가 등]
- 제9조의4[인증의 취소 등]
- 제9조의5[안전관리인증기준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등]
- 제9조의6[교육훈련기관 지정취소 등]

같은 법 시행규칙

- 제7조[안전관리인증기준의 작성·운용 등]
- 제7조의2[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확인서의 발급]
- 제7조의3[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신청 등]
- 제7조의4[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 제7조의5[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등]
- 제7조의6[조사·평가의 방법 등]
- 제7조의7[안전관리인증기준 및 운용의 적정성 검증]
- 제7조의8[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취소 등]
- 제7조의9[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 제7조의10[교육훈련기관의 교육 내용 및 준수사항 등]
- 제7조의11[교육훈련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HACCP 제도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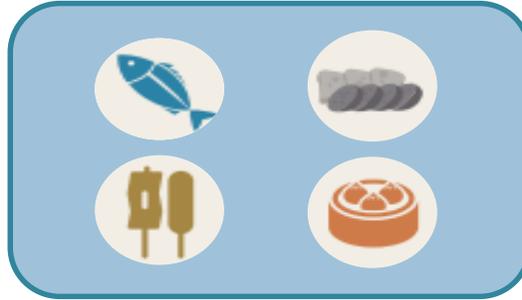


식품 HACCP 의무적용 현황



08.12. ~ 14.12.
의무적용 완료

- 비가열음료
- 빙과류
- 배추김치
- 레토르트 식품



16.12. ~ 17.12.
의무적용 완료

- 냉동수산식품
(어류 · 연체류 · 조미가공품)
- 즉석조리식품 (순대)
- 어묵류
- 냉동식품
(피자류 · 만두류 · 면류)



14.12.~21.12.
의무적용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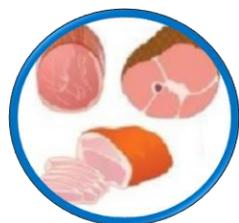
- 과자 · 캔디류
- 빵류 · 떡류
- 초콜릿류
- 어육소시지
- 음료류
- 즉석섭취식품
- 국수 · 유탕면류
- 특수용도식품



축산물 HACCP 의무적용 현황



식육가공업



- 1단계 : 16년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업소(18.12.01. 시행)
- 2단계 : 16년 매출액 5억원 이상인 업소(20.12.01. 시행)
- 3단계 : 16년 매출액 1억원 이상인 업소(22. 12. 01. 시행)**
- 4단계 : 1~3단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소(24.12.01 시행)

식육포장처리업



- 1단계 : 20년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업소(23.01.01. 시행)**
- 2단계 : 20년 매출액 5억원 이상인 업소(25.01.01. 시행)
- 3단계 : 20년 매출액 1억원 이상인 업소(27. 01. 01. 시행)
- 4단계 : 1~3단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소(29.01.01 시행)



HACCP 인증현황 (식품)

식품

10,356개소, 20,850건 인증

- 대구 · 경북 1,028개소(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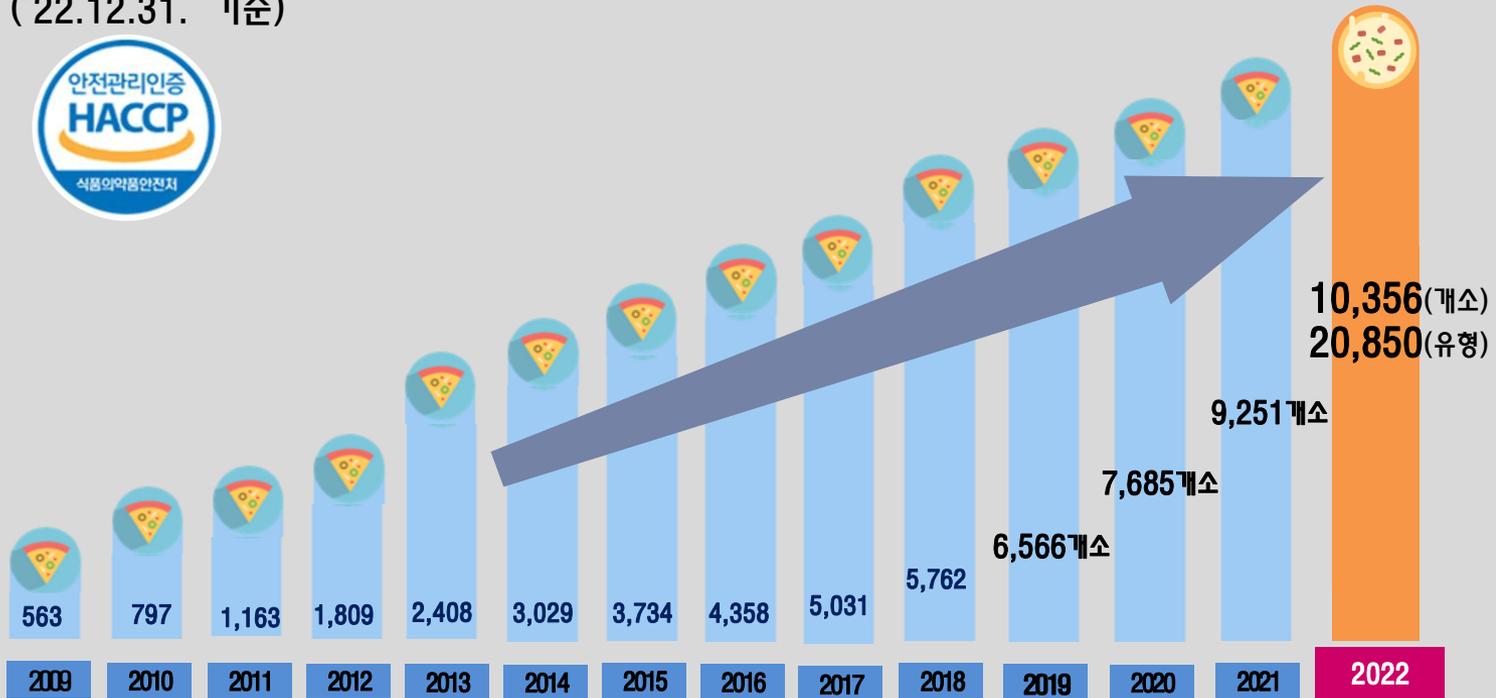
1,800건 인증

대구 241개소 422건

경북 773개소 1,364건

의무적용 10,323건(7,077개소) / 자율적용 10,527건(5,633개소)

(’22.12.31. 기준)





HACCP 인증현황 (축산물)

축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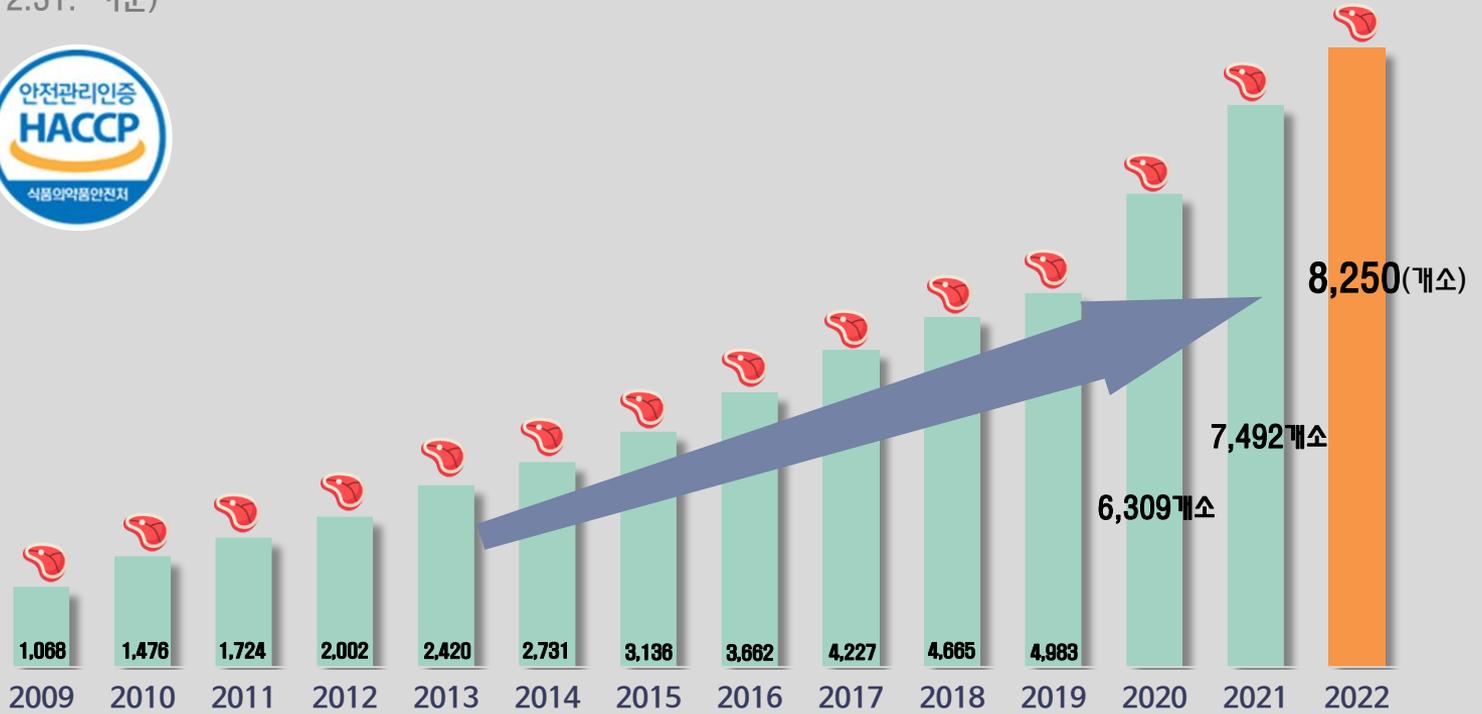
8,250개소 인증

- 대구 · 경북 882개소(10.7%)

대구 380개소
경북 502개소

(가공업) 5,661개소, (축산물 유통 및 식용란선별포장업) 2,589개소

(`22.12.31. 기준)





HACCP 인증현황 (식품 및 축산물)

생산량

식품 · 축산물 HACCP 인증제품(가공식품, 축산물가공품) 생산량 90.1%

(’22.12.31. 기준)



2

HACCP 관련 정책



축산물 HACCP 인증 의무화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에 따른 HACCP 인증 의무화

→ **공포 : 2020. 4. 7. , 시행: 2020. 10. 8. [축산물 위생관리법 부칙 제17249호 참조]**

▶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1단계), 알가공업, 유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에 대한 HACCP 인증 완료 추진 [2020.10.8. ~ 2021.10.7.]**

▶ **축산물 HACCP 인증 유효기간 연장심사 (재지정, 갱신)**

- 유효기간 시작일: 인증 승인일(심사결과 결재 날짜)
- 유효기간 만료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일('20.10.8.)부터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운영하고 있는 날을 역산하여 부여(4, 5, 6년)

1. 2017.10.8 이전 인증업체: 2024.10.8 ~ 2025.10.7 연장심사 대상
2. 2017.10.8 ~ 2018.10.7 인증업체: 2025.10.8 ~ 2026.10.7 연장심사 대상
3. 2018.10.8 ~ 2020.10.7 인증업체: 2026.10.8 ~ 2027.10.7 연장심사 대상
4. 2020.10.8 ~ 인증업체: 3년 주기 연장심사 대상

※ 예시) 2018. 6. 1. 인증 / 2018. 12. 1. 의무적용 시작 / 2020. 10. 8. 법 시행

→ '18. 12. 1. ~ '20. 10. 8.로 해당 기간은 2년 미만으로 산정되므로 인증 유효기간은 6년 부여



식육가공업 관련 정책

식육가공업 의무 적용

➔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 (공포 및 시행 '17.12.29)

▶ 식육가공업 영업자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의무적용하도록 하며,
의무적용은 '16년 매출액 기준 단계별로 시행됨

- 1단계, 2단계('16년도 매출액 5억원 이상) 의무적용 업소는 HACCP 인증 완료(~'20.12.01)

< 식육가공업 의무시행 단계 >

1단계 : '16년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업소('18.12.01. 시행)

2단계 : '16년 매출액 5억원 이상인 업소('20.12.01. 시행)

3단계 : '16년 매출액 1억원 이상인 업소('22. 12. 01. 시행)

4단계 : 1~3단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소('24.12.01 시행)

★ 영업소는 해당 시행일 이전에 인증원으로부터 HACCP인증을 받아야 함



식육포장처리업 관련 정책

식육포장처리업 의무적용 및 자가품질검사 의무화

- ➔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 (2020.12.29 공포, 2021.6.30 시행)
 - ▶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의무적용하도록 하며, 의무적용은 20년 매출액 기준 단계별로 시행됨
 - ▶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개정 (식약처 고시)
 - 분쇄포장육 제조 식육포장처리업자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의무화함
- ※ 검사항목: 장출혈성대장균, 주기: 1개월에 1회

< 식육포장처리업 의무시행 단계 >

- 1단계 : `20년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업소(`23.01.01. 시행)
- 2단계 : `20년 매출액 5억원 이상인 업소(`25.01.01. 시행)
- 3단계 : `20년 매출액 1억원 이상인 업소(`27. 01. 01. 시행)
- 4단계 : 1~3단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소(`29.01.01 시행)

★ 영업소는 해당 시행일 이전에 인증원으로부터 HACCP인증을 받아야 함

식품 냉동·냉장업, 식품운반업, 공유주방의 HACCP 평가기준 신설

→ **식품 냉동·냉장업소**에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에 따라
제품을 보관·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인증 평가기준 마련 필요

< 예시: 식품냉동·냉장업체 평가기준 >

선행요건 관리 (36개 항목)	✓ 작업장 시설관리, 위생관리, 보관관리
안전관리인증 관리 (15개 항목)	✓ 팀구성, 공정흐름도 작성, 위해요소분석, 한계기준 설정, 개선조치방법 수립, ✓ 검증 및 기록유지방법 설정

→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여러 영업자가 하나의 영업 시설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유주방의 법적 근거 마련에 따라 **공유주방의 특성을 반영한 HACCP 평가 기준 신설**

→ 식품 소비 환경변화 및 감염병 발생 등으로 인해 식품의 **온라인 유통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어 **식품운반업에 대한 HACCP 평가기준을 마련**



간편조리세트 및 식육간편조리세트 신설

간편조리세트

→ 간편조리세트란?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 [개정: 2020.10.16, 시행: 2022.1.1]

- 시중에서 밀키트라 불리는 형태의 제품으로서, **조리되지 않은 손질된 농·축·수산물과 소스 등 가공식품**으로 구성되어, 소비자가 가정에서 간편하게 조리하여 섭취할 수 있도록 제조한 제품

※ 신선편의식품, 즉석섭취식품, 즉석조리식품 → 기존 유지(3유형), 간편조리세트 신설

※ 따로 품목제조보고하여 생산한 완제품을 단순히 합포장한 제품 또는 자연산물을 단순처리한 재료만을 합포장하는 경우는 간편조리세트로 분류되지 않음

→ 유의사항

- 간편조리세트를 생산하려면 관할 관청에 **품목제조보고**를 해야함
- ‘즉석조리식품’ 유형 등으로 HACCP 인증 받은 업체에서 ‘간편조리세트’ 유형으로 분할 또는 재분류 희망업체는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인증원 관할 지원에 재교부 신청**
 - * 구비서류 : 신청서, 변경 전후 품목제조보고, 간편조리세트 제조가공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가열 없이 섭취하는 재료**에 대해서는 신선편의식품에 준하는 **강화된 미생물 규격**이 적용

간편조리세트 및 식육간편조리세트 신설

식육간편조리세트

→ **식육간편조리세트란?** <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 > [공포:2021.8.10, 시행: 2022.1.1.]

- 축산물을 주원료 하는 간편조리세트로 축산물 관련 영업으로 만들 수 있도록 신설된 축산물의 유형 (대상: 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주원료) 자신이 절단한 식육 또는 자신이 만든 식육가공품 (60%이상, 분쇄육은 50%이상)
- (부원료) 조리되지 않은 손질된 농수산물, 가공식품

< 식육간편조리세트와 간편조리세트 비교 >

→ 유의사항

- 식육간편조리세트를 생산하려면 식육간편조리세트 품목별로 관할 관청에 **품목제조보고**를 해야함
- **식육가공업 HACCP 인증 업체**의 경우 식육간편조리세트를 추가 생산하려면 **HACCP 변경 신청**을 해야 함

구 분	식육간편조리세트	간편조리세트
근거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업 종	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제품범위	육함량 60% 이상 (분쇄육은 50% 이상)	육함량 60% 미만 (분쇄육은 50% 미만)
예시		



HACCP 유예 기준 및 절차

HACCP 연장심사 유예 (소규모→일반 전환)

- 유예대상 : HACCP 연장심사 대상 업체 중 “소규모 → 일반” 전환업체
- 유예기간 : 신청서 및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1년 범위** 내에서 연장심사 시기 유예
- 적용범위 : HACCP 적용을 위해 **시설·설비 개·보수**를 위하여 일정 기간이 필요한 경우
※ 연장심사 만료일 이전에 처리 완료 필요





HACCP 유예 기준 및 절차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체

→ **유예대상** : 전년도 매출액 100억 원 이상 식품제조·가공업체(이하 100억 의무 업체)

※ 식품제조·가공업 97억 + 유통전문판매업 4억으로 도합 100억원이 넘는 경우
→ 100억 의무 아님(식품제조·가공업 전년도 매출액으로만 판정)

※ 100억 의무업체가 된 경우, 다음해 매출액이 100억원 이하로 변경되더라도 계속 100억 의무업체에 해당

→ **유예기간** : 업체에서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 6개월 범위 내에서 의무적용 시기를 유예

→ **적용범위**

-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 되어 당해연도 신규 의무적용 대상이 된 경우

※ 생산실적보고 완료일 이전에 요청

- 기존 100억 의무적용 업소는 신규로 식품유형 추가하는 경우



소규모 실시상황평가표 개정

19년
개정

소규모 실시상황평가표

- 일반기준과 동일하게 항목별로 **차등 배점** (점수제)
- 작업장 구획, 원부재료 보관 관리 등 선행요건관리 중 **4개 항목 추가·변경**

선행요건관리 평가항목 추가·변경			필수항목 관리여부 평가		
평가표	평가항목	비 고	평가표	평가항목	비 고
②	작업장 구획	선행요건 관리 항목 추가	⑬	지하수 용수관리	선행요건 관리
⑮	원부재료 보관 관리		⑭	원부재료 입고관리	
⑯	운송관리		①, ②, ④	중요관리점 및 모니터링	HACCP 관리
⑧	교육훈련	항목 이동 (선행요건 ▶ HACCP관리)	⑥	개선조치	



불시평가 확대

HACCP 인증업소에 대한 불시 조사·평가 확대

➔ **축산물 HACCP 업체 불시평가 근거 마련 (2018.4.25)** [식약처 고시 제 2018-31호]

⇒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항이 발견된 업소** 대상 불시 조사·평가 실시

➔ **조사·평가 사후관리 대상 전면 불시평가 전환 (2019.3.4)** [식약처 고시 제 2019-12호]

⇒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 15조(조사평가의 범위와 주기 등)

②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 조사·평가 대상업소(농장은 제외한다)와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항이 발견된 업소 등에 대해서는 불시에 조사·평가를 실시하고,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 또는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법 위반사항 외의 정기 조사·평가 대상까지 확대하여 불시 평가하도록 개정**



사후관리 계획

중점 추진사항

→ 모든 조사·평가 대상업소에 대해 **현장평가 또는 자체평가 실시**

⇒ 자체평가 **매뉴얼 보급**, 평가결과 **검증** 등을 통해 **자율관리 능력 향상**

→ **업체 운영수준에 따른 사후관리 차등화**

⇒ **(문제업체 강화)** 식품안전 사건사고 이력 업체 등에 대해 **불시평가 확대(1회/년 → 2회/년)**

* 기준규격 위반, 식중독 발생 또는 식중독균 검출, 혐오성·위해성 이물(칼날, 동물사체 등) 의심, 내부고발 민원, 언론보도 등

⇒ **(우수업체 완화)** 조사평가 결과 우수양호(90% 이상 득점) 업체, 불시평가 결과 2년이상 적합 판정 업체 등(현장평가 → 자체평가)

→ **법령 위반업소에 대한 조사·평가 감점 도입**

- 전년도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체는 평가 시 감점 적용(고시 개정, '23.1.1 시행)



HACCP 인증관리 내실화

- 인증 평가 시 필수항목 지정으로 미흡(0점)시 인증심사 부적합 처리 (2019.12)
- 조사·평가 시 전년도 정기 조사·평가의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감점 점수의 2배 감점 (2019.12)
- 축산물 의무업종(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에 대한 사전인증제 도입 (2020.4)
- 식품위생법 등 법령 위반업체에 대해 HACCP 조사·평가 감점 (2022.5)



즉시 인증취소 제도



즉시 인증취소(One-strike Out) 규정 시행

→ 주요 위생안전조항 **1개 이상 위반 시** 또는 **평가점수 60점 미만일 경우**

위생안전조항
(5항목)

원부재료 검수 미흡

지하수 살균소독 미흡

작업장 세척·소독 미흡

중요관리점 공정관리 미흡(모든 제품)

위해요소분석 미 실시
(인증 이후 추가 생산 제품 또는 공정에 한함)



스마트 HACCP이란?

- 식품제조공장에 IoT 등 기술을 활용, 식품 안전 정보를 디지털화하고, 중요관리점 모니터링을 자동화하는 등 HACCP 관련 데이터 수집관리분석을 총망라한 디지털 기반 HACCP 종합 관리 시스템
- 중요관리점(CCP) 자동 기록관리 뿐만 아니라, 데이터 교환 · ICT 융합 등 기술을 활용해 비대면 심사 준비도 가능



자동 기록관리시스템(스마트 HACCP 우대조치)

-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의 적용 품목 심벌 신설 및 평가 가점부여 등 우대조치 강화
- 스마트 HACCP 등록 및 관심업체에서 기존 인증업체와의 차별화를 위해 마크 표시 등 우대조치 강화 요구(HACCP KOREA 및 기술지원 시 다수업체 요청)

우대 조치

- 스마트 HACCP 인증업체 불시 조사·평가 면제
- 스마트 HACCP 기록일지 전산문서 인정
- 스마트 HACCP 표시, 광고 허용(심벌)
- 인증(연장) 평가 시 가점 부여(HACCP관리 3% 가점, 전체의 1.5%)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한 스마트 해썹 적용업체입니다 ”

자동 기록관리시스템(스마트 HACCP 등록절차 명확화)

→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적용업소에 대한 등록 평가 기준을 마련하였으나, 등록 연장심사 및 등록 취소 절차 부재 등 행정절차와 보완 필요

등록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제조·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 축산물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용란선별포장처리업
유효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ACCP 인증의 연장심사와 등록 유효기간 동일(3년)
등록중 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기록관리 시스템 적용업소 등록중 교부
반납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 반납 등 사유발생 시 등록을 반납할 수 있도록 절차 마련



HACCP 교육강화로 ‘민간전문가’ 양성

HACCP 교육강화

→ 현행 ‘식품기사’ 자격을 ‘식품안전기사’ 로 개편

- 목적: HACCP 적용 활성화로 인증업체 지속 증가에 따라 해썬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국가기술자격 개편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확보 필요

구 분	기 존	변경 후
직무 명칭	- ‘식품품질관리’ 용어 사용	- ‘ 식품안전관리 ’ 로 변경 요구 수용
직무정의	- ‘식품가공 등의 포괄적인 업무 수행 등’	- ‘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 ’
시험문제 출제분야 조정	- 식품위생학, 식품화학, 식품가공학, 식품미생물학, 생화학 및 발효학(5과목)	- 식품안전 , 식품화학, 식품가공학, 식품미생물학 및 생화학 (4과목)
HACCP 관련 출제 문항 비중	15% ~2019	35% 2020
NCS 모두 반영	- 개발된 NCS 능력단위 중 HACCP 관련 항목(7원칙 12절차 관련 사항 등) 모두 반영	

법령 개정 후 증가 예정
2022

- 「국가기술자격법」 개정(‘22) → ‘식품안전기사’ 시행 계도기간(2년) 부여(~ ‘24) → ‘식품안전기사’ 자격 시험 실시(’ 25~)

→ 식품안전 미래인재 육성 프로그램 교육 실시(2021~)

- 식품안전교육센터에서 HACCP 등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교육 실시



대한민국!

식품안전강국!